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하자보수보증서 징구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진주시, 거창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정하여야 하고,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¹⁹⁰⁾을 정하고,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적용하는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고,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하며,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시운전 합격 시)까지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 및 19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조건부로 계약을 체결 시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진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자보수보증서 징구 부적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을 추진하면서, 기획 ○○국 ○○과는 2008. 12. 5. ○○○○(주)와 5,319백만원(2008. 12. 15~2015. 1. 31)의 시설공사를 계약, (주)○○○○○○○○ 외 1개사(주)○○)와 601백만원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계약, 2009. 5. 13. (주)○○○○과 669.9백만원의 공법기자재 오폐수제거장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 ○○○○과는 사업부서로서 2010. 6. 23. 공법기자재를 검수하고, 2015. 1. 30. 시운전을 완료하여 2015.

190)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정공사(5%), 공항, 항만, 석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4%),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3%), 이상의 공사 외의 공사(2%), 물품의 제조(3%), 수리, 가공, 구매, 용역(2%)

2. 3. 준공검사를 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국 ○○○과는 2010. 6. 23. ○○○○(주)와 6,571백만원(2010. 6. 24~2014. 9. 18)의 시설공사를 계약, (주)○○ 외 1개사((주)○○)와 694백만원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계약, (주)○○○○○○○○○○와 629백만원의 공법기자재 오폐수제거장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 ○○○○과는 사업부서로서 2011. 12. 5. 공법기자재를 검수하고, 2013. 12. 31. 시운전을 완료하여 2014. 9. 2. 준공검사를 하였다.

①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기간 산정 부적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2008. 12. 5. ○○○○(주)와 계약 시 정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지 않았으며, 준공 시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이 5%임에도 3%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의 하자담보기간은 7년임에도 3년으로 발급받은 하자보수보증서를 청구하여 하자보수보증금 69,768천원과 하자담보기간 약 4년을 축소하였다.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하자보수보증금	104,653,200원 <3%>	174,422,000원 <5%>	중요구조물 계약금 : 3,488,440,000원
하자담보기간	2015.2.3.~2018.2.2. <3년>	2015.2.3.~2022.6.4. <7년>	

또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2010.6.23. ○○○○(주)와 계약 시 정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지 않았으며,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률이 5%임에도 3%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의 하자담보기간은 준공검사일인 2014. 9. 2.부터 7년임에도 3년(2014. 4. 23)으로 발급받은 하자보수보증서를 청구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 3,758천원과 하자담보기간 약 2년을 축소하였다.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하자보수보증금	5,638,380원 <3%>	9,397,300원 <5%>	철근콘크리트 계약금 : 187,946,000원
하자담보기간	2014.4.23. ~ 2019.4.22. <5년>	2014.9.2. ~ 2021.9.1. <7년>	

② 공법기자재 하자보증기간 산정 부적정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과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공법기자재를 각각 (주)○○○○과 (주)○○○○○○○○○○와 체결하였으며

<공법기자재 계약 현황>

구 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비고
처리용량		1,000㎥/일	2,250㎥/일	
공법명		HBR-II (주)○○○○	MS-BNR (주)○○○○○○○○○○	
사업기간		2008.12.15. ~ 2015.1.30. (시운전 완료일 2015.1.30)	2010.6.24. ~ 2014.9.1. (시운전 완료일 2014.9.1)	
공 법 자 재	계약일	2009. 5. 13.	2010. 9. 13.	
	검수일	2010. 6. 23.	2011. 12. 5.	
	납품금액	669,900,000원 (일반기계 : 370,916,142원, 리엑터 : 298,983,858원)	629,900,000원	
	시 운 전 성능이행 보증기간	2010.6.18. ~ 2011.1.31.	2011.11.29. ~ 2013.12.31.	
	하자담보 기간	2012.2.5. ~ 2015.2.4.(3년)	2014.1.1. ~ 2015.12.31.(2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공법기자재는 시운전조건부 계약으로 납품검사 완료일인 2010. 6. 18.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인 2015. 1. 30.까지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보험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1,460일을 축소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주)○○○○에 1,406천원의 혜택을 주었고, 시운전이 완료된 날인 2011.1.30.부터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에

도 목적물을 인수한날인 2012. 2. 5.부터 기간을 산정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청구함으로써 하자담보기간을 1,091일 축소하였다.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법기자재>

구 분	보험기간 재산정	추가(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 산정	비 고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보험	2010.6.18.~2011.1.31. ⇒ 2010.6.18.~2015.1.30. (추가 1,460일)	$669,900,000\text{원} \times 5\% \times 1.05\% \times 1,460\text{일} / 365\text{일} = 1,406,790\text{원}$	시운전 완료시 까지
하자보증 보험 (3년)	2012.2.5.~2015.2.4. ⇒ 2015.1.30.~2018.1.29. (추가 1,091일)	$157,320\text{원} \times 1,091\text{일} / 1,096\text{일} = 156,600\text{원}$	시운전 완료시 부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공법기자재는 시운전조건부 계약으로 납품검사 완료일인 2011. 11. 29.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인 2014. 9. 1.까지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보험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244일을 축소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주)○○○○○○○○에 221천원의 혜택을 주었고, 시운전이 완료된 날인 2014. 9. 1.부터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에도 목적물을 인수한 날인 2014. 1. 1.부터 기간을 산정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청구함으로써 하자담보기간을 244일 축소하였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공법기자재>

구 분	보험기간 재산정	추가(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 산정	비 고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보험	2011.11.29.~2013.12.31. ⇒ 2011.11.29.~2014.9.1. (추가 244일)	$629,900,000\text{원} \times 5\% \times 1.05\% \times 244\text{일} / 365\text{일} = 221,060\text{원}$	시운전 완료시 까지
하자보증 보험 (2년)	2014.1.1.~2015.12.31. ⇒ 2014.9.1.~2016.8.31. (추가 244일)	$97,000\text{원} \times 244\text{일} / 730\text{일} = 32,420\text{원}$	시운전 완료시 부터

2. 거창군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자보수보증서 청구 부적정

거창군 ○○사업소(구 ○○○○사업소)는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2011. 10. 6. ○○○○○(주)외 1개사(○○○○(주))와 3,241백만원(2011. 10. 12~2014. 5. 27)의 시설공사를 계약, (주)○○○○○○○○외 1개사(주)○○)와 548백만원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계약, 2013. 4. 22. (주)○○○○

와 391백만원의 공법기자재 막구조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6. 5. 준공검사를 하였다.

①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기간 산정 부적정

2011. 10. 6. ○○○○○○(주)와 계약 시 하자보수보증금률 5%, 하자담보기간 7년으로 계약하였으나, 2014. 6. 5. 준공검사 완료 후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기간 3년으로 발급받은 하자보수보증서를 징구하여, 보증금액 50,484천원과 하자담보기간 4년을 축소하였다.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기간>

구 분	기 준	재 산 정	비 고
하자보수보증금	75,726,000원 <3%>	126,210,000원 <5%>	계약금액 : 2,524,200,000원
하자담보기간	2014.6.5~2017.6.4. <3년>	2014.6.5~2021.6.4. <7년>	
하자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956,720원	약 1,387,590원	

② 공법기자재 하자담보기간 산정 부적정

(주)○○○○는 공법제안 시 하자담보기간 5년으로 제시하여 공법에 선정되었으나, 2013. 4. 22. 계약 시 하자담보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며, 2014.6.5. 준공검사 후 3년으로 하자보수보증서를 징구하여 하자담보기간 2년을 축소하였다.

<침지형분리막 구입(수처리용, 총인용)' 물품 하자보수보증금 및 기간>

구 분	기 준	재 산 정	비 고
하자보수보증금	11,732,160원 <3%>	변동 없음	계약금액 : 391,072,000원
하자담보기간 (수처리용, 총인용)	2014.6.5.~2017.6.4 <3년>	2014.6.5~2019.6.4. <5년>	

조치할 사항 진주시장, 거창군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공법기자재의 하자보수보증금률과 하자담보기간을 재산정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다시 청구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